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DC,기업형·개인형IRP)

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	담당	책임자

년 월 일

전 산 인 자 란

1. 신청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제도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계좌번호 또는 회사명	DC, 기업형IRP의 가입자는 회사명 작성	
입사일			중간정산일		

2. 신청 내용

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_____ 원		
	[일부 신청시 유의사항] 1. 전일자 평가금액의 90%,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단, 퇴직소득과 기타소득(가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 퇴직소득 전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인출순서는 ① 비과세소득(보유상품) → ② 퇴직소득(보유상품) → ③ 기타소득(보유상품) 순으로 인출되며, 각 소득별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합니다. 매도순서 지정은 비과세, 퇴직소득 또는 퇴직,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 '매도순서 지정신청서'(별지-출력물로 제공)를 작성(필수) 하시고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뒷면에 매도순서를 작성(필수) 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여부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임원		
	[법인의 임원인 경우 중도인출시 세법관련 유의사항]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에 초과 분에 대하여 기업 앞 반환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임원퇴직급여 한도금액 확인서」 징구 필요 - 임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초과 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 지급시 손비(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가입자 부담금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없음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있음		
	[가입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5-20-0006_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지급 신청서) 및 사유별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부득이한 사유의 세율 적용 - DC,기업형IRP : 「가입자 부담금 + 운용수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율 적용 - 개인형IRP : ① 퇴직금 : 이연퇴직소득세 X 70%, ② 그 외(소득/세액공제 적용 원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율 적용 (3.3 ~ 5.5% 적용)</div> 2.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부담금의 원금은 비과세 적용되므로 신청 전 필요서류(연금보험료등 세액 공제 확인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담금 입금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 (금액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연동출금동의(사전에 당행과 약정된 경우 가능) <input type="checkbox"/> 연동출금미동의(회사 별도 입금처리, 미입금시 지급처리 진행 불가)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본인 계좌만 가능

3. 중간정산 특례 신청

당해년도에 퇴직연금 지급 이외에 회사(또는 당행 외 타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퇴직금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있음(합산적용 필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당해년도 이전에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 합산과세* 적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 적용 시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출한 후 기 납부된 퇴직소득세를 차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제출서류 안내

*사유별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제출서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배우자명의 등기는 신청 불가(공동명의로는 가능) [본인주택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본인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신청접수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함) *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경과시 신청 불가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분양계약서 (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주택 신축 또는 경매취득의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신축의 경우), 경매 증명서(경매의 경우) *현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 소유 주택 재건축(중축, 개축 등) 사유로 중도인출 불가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전세 및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계좌이체내역서 가능)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6개월 이상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 부담	의료비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내용 및 질병명과 질병코드명시)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 의료기기의 임차 또는 구입의 경우 보호구 처방전
	연간임금총액 확인 서류	- 가입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부양가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60세 이상인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미성년자의 경우 필요시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 기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변제계획서 포함) *신청일 기준 5년이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양가족 확인 서류	상기 “6개월 이상 의료비 부담”의 부양가족 확인서류와 동일
	피해 확인 서류	(자연재난) 건축물대장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피해상황확인서 (사회재난) 건축물대장등본(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인자료 및 주거비 지원 내역
추가서류 [가입자부담금이 있으면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제외 및 환급신청서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서(연합회한도 조회용) - 연금납입확인서	

